

# EU의 단일 은행 정리기구 설립 추진 방안

(2013. 7. 16)

파리사무소

- ◆ 7.10일(수), EU집행위는 금융연합(Banking union)의 2단계로 단일 은행 정리기구(Single Resolution Mechanism) 추진방안을 발표
  - 금년말까지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동 방안을 채택하고, 現 유럽 의회 임기(내년 상반기)내에 관련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
  - 관련법안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경우, 2015. 1월부터 운영 계획

## 1. 단일 은행정리기구의 구성

### □ 단일 은행정리 이사회(Single Resolution Board)

- (구성) 이사회 의장(Executive Director), 부의장, EU집행위 및 ECB에 의해 임명된 대표들, 참여 회원국 은행정리당국의 대표들
- (운영) 총회(plenary session)와 이사회 회의(executive session)에서 의사결정
  - 총회에는 모든 이사회 구성원 참여, 일반 및 예산업무 관련한 의사결정 담당, 단순 다수결 원칙
  - 이사회에는 의장, 부의장, EU집행위/ECB에 의해 임명된 대표들, 관련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, 개별 은행의 회생/정리 관련 의사결정(단일 은행정리기금 활용 등 포함), 단순 다수결 원칙

### □ 단일 은행정리기금(Single Bank Resolution Fund)

- (재원조달) 참여 회원국 은행들로부터 재원을 조성. 10년에 걸쳐 참여 회원국 은행들의 예금보장수신의 1% 수준으로 조성 계획

- 2011년 기준으로 산정 시 동 기금은 550억 유로 수준
- (개별 회원국 은행정리기금과의 관계) 동 기금은 개별 회원국 은행 정리기금을 대체. 개별 회원국은 기 조성된 자국 은행정리기금에서 자국 은행들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 가능

## 2. 단일 은행정리기구의 운영

### □ 적용범위

- 단일 금융감독기구에 참여하는 회원국(유로존 18개국은 의무, 기타 회원국은 자발적 참여 가능) 소재 모든 은행(약 6,000여개)에 적용

### □ 운영방식

- 유럽중앙은행(ECB) : 단일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참여회원국 내 은행 중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회생/정리 절차가 필요한 경우 파악
- 단일 은행정리기구 이사회 : 위기 은행에 대한 회생/정리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사 결정 (회생/정리 수단의 선택, 단일 은행정리 기금의 활용 등)
  - 개별 회원국 은행정리 당국의 위기 은행에 대한 회생/정리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, 필요 시 해당 은행에 직접 개입 가능
- EU집행위 : 단일 은행정리기구 이사회의 제안 또는 자체 판단 등에 기초, 위기은행에 대한 회생/정리절차 개시 여부 및 시점 결정
- 개별 회원국 은행정리 당국 : 위기 은행의 회생/정리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담당

\* EU집행위가 회생/정리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토록 한 이유

- 現 EU조약상 EU기관(EU집행위, ECB, EU이사회, 유럽의회, EU사법재판소)만이 EU 차원의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
- ECB의 경우, 감독당국으로서 회생/정리 관련한 의사결정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행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 구조조정에 경험이 많은 EU집행위가 은행의 회생/정리 절차 개시 및 개시시점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보유

□ 운영시기

- EU이사회에서 금년말까지 단일 은행정리기구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, 現 유럽의회 임기 내(내년 상반기)에 관련법안 입법을 무리할 방침
-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경우, 2015. 1월부터 운영할 계획

(자료: 무역협회 브뤼셀 지부, 주유럽연합 한국대사관)